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권인순 의원)

의안 번호	23-132
----------	--------

발의년월일 : 2023. 11. .

발의자 : 권인순, 권영숙, 고병준, 김승수,
남해석, 오욱자, 안미자, 이한동,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1. 제정이유

최근 각 지역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적용범위,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제8조)

마. 안 제6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8. 17. ~ 8.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의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제6조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6조의 지원계획을 우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전액 무상,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내
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1천만원 이내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민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마포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본조신설 2015. 7. 9.]

마포구 침수방지시설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신청

2. 비용추계의 전제

- 물막이판 : 400천원/m
- 역지변 : 150천원/개소
- 해당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50:50)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구기금	800,000	400,000	400,000	400,000
○시기금	8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400,000
소계(a)	1,6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800,000
세출	○구기금	8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400,000
	○시기금	8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400,000
	소계(b)	1,6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800,000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자체 수입	○구기금	800,000	400,000	400,000	400,000
○시기금	8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400,000
의존 재원							
합계		1,6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800,000

5. 덧붙이는 의견: 비용추계의 세부세출은 추정액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물관리과 이재환
연 락 처	02-3153-981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비고
물막이판 설치(개소)	1,100 (계약물량)	500 (추정물량)	기설치 대상의 내구년한 경과로 인한 교체 및 침수이력, 현장 조사 및 설치요청 민원발생분 반영
역지변 설치(개소)	1,752 (계약물량)	1,000 (추정물량)	